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 등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65호, 2020. 6. 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최소한의 손해액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항공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교육생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비행훈련 업무를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은 항공기사용사업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8. 7 ~ 9.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및”을 “(”로, “비행훈련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비행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호”를 “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 ④ 법 제7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 비행훈련의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라 비행훈련 업무를 실

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8. (생략) 9.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 12. (생략) 제70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조(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 --(-- ----- ----- ----- -----비행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 --) 10. ~ 12. (현행과 같음) 제70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④ 법 제7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⑤ ----- ----- ----- ----- <u>호 및 같은 조 제3항</u>----- ----- ----- -----.
--	--